

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최광옥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생활문화예술의 정의 (안 제2조)
-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 -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
 -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도지사의 권장·육성
-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(안 제4조)
 - 주민 문화예술단체,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
 -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,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

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, 안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.

금번 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. 끝.